

NEWSLETTER

January 2024

조세 그룹 TAX Group

CONTACT

외국변호사 김정흥

T: 02,6386,0773 E: junghong.kim @leeko.com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발효 및 시행

지난해 말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한-대만 조세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 12. 2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자는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그 밖의 조세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본 약정에 따른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변호사 임한솔

T: 02,6386,6367 E: <u>hansol,leem</u> @leeko.com



공인회계사 **김태환**

T: 02,6386,0863 E: <u>taehwan,kim</u> <u>@leeko.com</u>

1. 한-대만 조세약정의 입법 배경

대만은 10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한 긴밀한 경제협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 국가를 전제로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 부재하여 대만과의 무역, 투자 및 인적 교류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은 높은 현지 세부담과 이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하여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양측의 대표는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 에 서명하였습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은 형식적으로는 조약보다 아래 단계의 약정이지만, 합의내용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작년 말 이행 법률이 우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조약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한기창

T: 02,6386,7965 E: gichang,han @leeko.com



외국변호사 오예진

T: 02,6386,0887 E: <u>yejin,oh</u> <u>@leeko.com</u>

2. 과세권 배분 관련 주요 내용

한-대만 조세약정의 과세권 배분 규정은 OECD 모델조약의 기본 구조와 내용에 기반하면서 일부 UN 모델조약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고정사업장	■ 사무실, 지점, 공장 등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
	■ 건설업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수행한 활동을 포함하여, 6개월 초과시 고정사업장 구성
	■ 12개월 중 183일 이상 서비스(인적용역) 제공 시 고정사업장 구성
	■ 상시적인 계약체결대리인의 활동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구분	주요 내용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한하여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고정사업장과 본점 간 거래는 독립기업원칙 적용
배당·이자·사용료	■ 10% 세율을 한도로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국제운수소득	■ 국제운수기업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가능
양도소득	■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 단, 부동산,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인 동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지분(부동산주식), 지분율 25%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주(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소재지(원천지)에서 과세할 수 있음
연금	■ 거주지국 및 지급지국 양국에서 과세
조세회피방지	 사실관계와 정황으로 보아 이 약정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약정 적용 배제 국내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도 그대로 적용

3. 조세행정 협력 및 이중과세 방지 규정

한-대만 조세약정은 다른 조세조약과 같이, 같은 조건에 있는 거주자, 고정사업장 과세, 비용 공제, 자본소유 등에 관한 차별과세금지, 이전가격 과세처분을 포함한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조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호합의절차, 약정 또는 국내세법의 시행과 관련한 정보교환등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고 과세당국 간 행정협력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만에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국내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또한, 최소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만 소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러한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도 국내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다만, 법인세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이 10% 지분보유로 더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4. 시사점

금년부터 한-대만 조세약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만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만에서 세부담을 경감하고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미 대만과 조세약정을 체결한 일본, 호주, 독일 등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대만 현지법인이 이전가격 등을 이유로 대만에서 과세된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대만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한국과 대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 과세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양국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Bilateral Advance Pricing Agreemen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한 법률 자문, 다양한 국가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 업무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을 포함한 국제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